경관보전직불(지자체)

세부사업명	공익기능증	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							
내역사업명	경관보전직	불					예신 (백만		8,800
사업목적	○ 지역별 - 개선하고 도모		-	물 재배를 통 동촌관광·도	-	-		-	
사업 주요내용	-	후 지급		에 협약사형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	제도시험	행규정 제5	에 관한 특 장 농어업인 법농촌 및 스	삶의	질 힝	상 및 농	·어촌지역/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「농어업 등록한 : 농업인 !	자로서	경관보전직	원에 관한 불금 지급대		••			
지원한도	○ 지급단기 * 상한면?			만원/ha, 준 농업법인 5		물 10	0만원/ha	ì	
재원구성 (%)	국고	50	지방비	50	융자			자부담	
								(단위 : '	백만원)
연도별	구 분	20	17년	2018년	2019년		2020년		
 재정투입	합 계		23,080	18,5	36		16,712	1	7,600
현황	국 고		11,592	9,3	20		8,356		8,800
	지방비_		11,488	9,2	16		8,356		8,800
담	당기관		담당	·과		담당7	C	연택	박 처
농림축산식품	 F부	7	지역개발과		사두		l국회	044-20	1-1560
주무관 윤주영 044-201-15						1-1561			
국립농산물품	픍질관리원 -	1	동업경영정	보과			한창형 I지세		9-4072
신청시기	4월					사업시행기관 시·도, 시·군·구		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사업시행지침서	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
 -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 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(농업법인은 해당없음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가.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
 - ○「농지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
 -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
 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(지구)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
 -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: 경관작물 2ha이상, 준경관작물 10ha이상
 - ※ 동일지구에 경관/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,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.

❖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❖

-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
 - 식재 면적이 50%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(집단화 포함)
 - 식재 면적이 50%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, 수로, 제방, 도로,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(집단화 포함)

- 나.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
- ① 밭농업 직불금(논이모작 직불금)을 지원받는 농지(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)
- ②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 받는 농지
- ③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
-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
- ⑤「농지법」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·협의를 거친 농지
- ⑥ 「농지법」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
 - ※ 다만, ⑤∼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
- ⑦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·상업· 공업지역 안의 농지
- ⑧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·농공단지 안의 농지
- ⑨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
- ①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
 - ※ 다만, ⑦∼⑩항목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·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

3. 지원대상 작물

-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·유지·개선하기 위한 작물
 - 대상 작물간의 혼작, 간작, 색동재배(여러 작물 혼합구성), 디자인재배도 가능
 -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(초화류)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

< 경관직불금 대상작물(예시) >

경관작물	준 경관작물
갓, 구절초, 국화류, 꽃양귀비, 꿀풀(하고초), 달맞이꽃, 라벤더, 메밀, 유채, 자운영, 코스모스, 해바라기, 헤어리 베치, 감국, 안개초, 끈끈이대나무, 백일홍, 설악초 등	맥주보리, 청보리 등), 연꽃,

4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가. 지급단가

- 경관작물 170만원/ha, 준경관작물 100만원/ha
-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

나. 지원기준
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지방비 50%(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)
- 재원 : 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

다. 사업대상지구 준수(의무)사항

- 사업대상지구와 참여 농업인 등은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 -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,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, 농지 및 마을경관 개선 공동작업 등
-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,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·정비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
-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.
- ◈ 향후,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 작물, 지급단가, 지원요건 및 준수사항 등 조정 예정

Ⅱ 사업추진체계

집행 과정	시기	사업수행주체	주요 내용
사업신청 (수요조사)	4월	추진위원회	·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수립 · 사업 신청서,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
\downarrow			
사업수요 제출	5~6월	시·도, 시·군, 읍·면	·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
$\overline{\qquad}$			
사업면적 배정	7월	농림축산 식품부	· 신청면적 등에 따라 시·도별 사업면적을 배정하여 통지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 → 시·군)
$\overline{\qquad}$			
사업대상지구 선정	8월	시·도, 시·군	· 사업대상지구 선정 통지(시·군 → 읍·면, 추진위)
$\overline{\qquad}$			
협약체결	9~10월	시·군, 추진위원회	· 협약체결(시·군 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) -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(시·군)
<u></u>			
사업대상선정 결과 제출	11월	시·도, 시·군	· 시·군별 사업대상 선정(협약체결) 결과 및 면적배정 결과 제출(시·군 → 시·도 → 농림축산식품부)
$\overline{\qquad}$			
사업예산 배정	12월	농림축산 식품부	· 시·도별 대상면적 확정 및 사업예산 배정·통지 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 → 시·군)
\downarrow			
이행점검	(차년도) 개화기 (4~5월, 9~10월)	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	·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·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(농관원 → 시·군)
$\overline{\qquad}$			
보조금 지급	(차년도) 6월, 11월	시·도, 시·군	·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-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

1. 사업신청 단계

가.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

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

①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,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·사업신청· 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·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

- ②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(이장 등), 경관작물 재배농가(2명 이상),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(2명 이상)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
-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

나. 사업신청

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

-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읍·면·동장(이하 읍·면장이라 함)에게 제출(4월 말까지)
 -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(마을)의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(증빙자료 포함) 및 추진계획 첨부
- ② 읍·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

라. 사업신청서 접수

읍·면

- ① 읍·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
 -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·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,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
 -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, 임차, 위탁 영농 여부 등을 확인(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)
 - ※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- ② 읍·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 군수"라 함)에게 제출(5월 15일까지)
 -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(축척 1/1000지형도)를 첨부

마. 사업대상지구 추천

시・군

- ① 시장·군수는 읍·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서,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·확인을 거쳐 사업 신청지구를 시·도지사에게 추천(5월 말까지)
- ② 시장·군수는 사업신청지구의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를 시·군,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, 추진위원회 위원장, 경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[별지 제9호 서식]

시 · 도

③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(6월 10일까지)

2.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

가. 시·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

농림축산식품부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의 사업신청 현황,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,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로 사업대상 면적 배정(7월 말까지)
- 나. 시·군별(지구별) 사업대상 면적배정

시 · 도

① 시·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시·군의 사업 신청 현황,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로 사업면적 배정(8월 10일까지)

시・군

- ② 시장·군수는 읍·면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구를 "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구 선정기준[별지 제5호 서식]"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시·도에서 배정 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(8월 말까지)
 -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(지구)별 협약 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%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

- ③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, 대상자 등을 읍·면장, 추진위원장, 사업참여자,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
- 다.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

시 · 군.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

- ① 시장·군수는 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라 체결(9~10월)
- ② 시장·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
 - ※ 동계/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
- ③ 시장·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·군 및 해당 읍·면·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
- 라.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보고 및 확정

시・군

① 시장·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 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·도에 보고(11월 10일까지)

시 · 도

② 시·도지사는 Agrix시스템 입력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·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11월 말까지)

농림축산식품부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, 예산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로 예산 배정(12월 말까지)

3. 사업 이행 단계(차년도)

가. 작물재배관리

농업인 및 농업법인

- ① 경관작물 식재
 - 해당 농지의 토양, 토질,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, 식재
 - 집단화기준 충족

- ② 성실한 재배관리
 -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
 -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,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·보존
 - * 단, 관리·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
- 나.「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」 관리

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

- ① 추진위원회는「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」을 비치하고, 작물재배내용을 날짜별로 정리(전/후 사진 첨부)하여 관리하여 이행점검시 제시
- 다. 사업대상자 변경

농업인 및 농업법인

- ① 농지의 매매,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·면장에게 신청
 - ※ 사업대상자 변경(축소)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

읍·면

② 읍·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·군수에게 보고

시・군

③ 시장·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·면장, 추진위원장, 신청인 에게 통지하고.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4. 이행점검 단계(차년도)

가. 이행점검 의뢰

시・군

- ① 시장·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·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,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, 사무소)에 이행점검 의뢰
 - ※ 단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, 사무소)와 협의하여 의뢰시기 조정 가능

나. 이행점검 실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-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. 각 지원에 시달
- ② 점검시기 : 동·하계 사업별로 각 1회(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)
- ③ 점검기간 :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,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
- ④ 이행점검 사항: 마을경관보전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
- ⑤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함. 다만,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.

다. 점검결과 처리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-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[별지 9호 서식]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,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·군에 통보
 - *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을 AgriX 시스템으로 통보

시・군

② 시장·군수(읍·면장)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

라. 이의신청

시・군

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·군수(읍·면장)에게 서면[별지 제8호 서식]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·군수(읍·면장)는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,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·군으로 재전송

시・군

- ③ 시장·군수(읍·면장)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
- ② 시장·군수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·도에 이행점검결과를 통보
- 마. 이행점검 마감 및 결과 보고

시·도, 시·군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
- ② 시·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·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고, 그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동계작물 6월 10일까지,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-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, 사무소)의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 보고(동계작물 6월 10일까지, 하계 작물 11월 10일까지)
- 바. 이행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Agrix시스템에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

5.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 등(차년도)

- 가. 직불금 산출(시·군. 시·도)
- ① 직불금 산출기준
 -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(경관작물 m²당 170원, 준경관작물 m²당 100원)를 곱하여 산출하되 "직불금 감액기준"을 적용
 - *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

- ②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회(동계작물, 하계작물)까지 지급 가능
- ③ 직불금 감액기준
 -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산출

< 직불금 감액기준 >

지급요건	점검결과	감액기준
	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	○ 직불금 지급 취소(100% 감액) - 다만,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
	② 재배 면적부족	O 부족한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지급
	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	O 파종확인(농관원)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% 지급 - 다만,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
경관작물	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 적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	O 해당 필지별로 직불금 감액지급 -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* 불량면적 30% 미만은 감액 없음
재배관리	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	○ 직불금 지급 취소(지구전체 미지급) - 다만, 불가피한 사유(사망, 농지매매 등)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
	⑥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	O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(100% 감액)
	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	 ○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○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

- 다만,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"재해지구"로 선정되었을 경우,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·군수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.

나. 보조금 신청 및 교부

- ① 교부요청 : 시·도(시·군)는 사업대상지구별 지급대상자, 면적, 산출한 직불금 소요액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요청
- ② 교부결정 : 농림축산식품부는 시·도의 교부요청 등을 토대로 시·도별 교부 결정 통보
- ③ 전산작업 : 시·도(시·군)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-호조 및 e-나라도움 시스템 맵핑

- ④ 보조금 교부 : 농림축산식품부는 시·도에 보조금 교부, 시·도는 즉시 시·군에 교부액 전금
- 다. 직불금 지급(시·군)
- ① 시·군는 시·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
 - 입금 시 경관보전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"농식품부 경관보전"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(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)

라. 지급결과 보고

- ① 시·도(시·군)는 직불금 지급결과[별지 제10호 서식]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12월말)
- 마. 정산 및 반납(시·도, 시·군 등)
 - ① 시·도는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 -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시·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액 확정
 - ③ 시·도는 집행잔액 등 반납

Ⅲ / 평가 및 환류

가. 보 고

- ① 사업 수요조사결과 제출(6월 10일까지)
- ②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과 서면으로 보고(11월 말까지)
- ③ 직불금 지급액 결정내역 Agrix시스템으로 보고(동계작물 6월 10일까지,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)
- ③ 시·도(시·군)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: 12월 말까지

나. 환 류

- ① 지역축제, 농촌관광,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(마을)은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
- ②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, 파종 및 식재 불이행,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

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(사업지구)

1. 대상지역	두	시・군	음ㆍ명				리	법정리	기명
1. 11 0 1 1		,					리	행정리	기명
	가구수	총 호((농가 :	호, 비농가	· :	호)			
2. 지역현황	인구수	총 명((남자 :	명, 여기	아 :	명)			
2.717 28	경관작물 재배면적		(농가수 : / 밭	호) m², 과수원		m^2 ,	기타	ľ	n²)
3. 마을내	전통역사 (전통건축물,	적 자원 서낭당 등)		대적 자원 마을숲, 하철 등	등) <i>(</i> 2	생활			등)
경관자원 보유현황	(20212)	1000)	(3) (<u> </u>	0 E 1 1 1	
	경관직	물명	식>	재면적	스	닉재시 <i>기</i>	(파	종~수	확)
				m	2		~		
4. 경관작물 식재계획				m	2		~		
1/11/11				m	2		~		
	겨			m	2		~		
5. 지역축제, 농촌관광, 도·농교류 연계계획									
6.특이사항									
) 음은 주민들		수렴하여	불임과 같	<u>F</u> ol	경관보	전직	불제어	
잠여하고?	자 신청합니	+			녆	월		일	
	-1 41 41 -1	.						-	
	추진위원장	수 소 : 성 명 :		(서명	(또는	선화 : : 인))
○ ○ 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									
※ 붙임 : 1.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									
2.	2.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[별지 제2호 서식]								
3.	지역축제·농	·촌관광·도능	5교류 연계	전년도 추	진실	[적(증빙	자료	. 포함)	및
	추진계획								

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

성명	경영체	주 소			및 면]적(m²)	기 스	경관즈 재면	ት물볕 적(m	1 ²)	서명(인)	нIэ
78 6	등록번호	수 조 (주민등록주소)	합계	논	밭	과수원	기타					시명(원)	비ᅶ
													추진 위원장
													추진 위원 1
													추진 위원 2
													추진 위원 3

	경관보전직불제 참여(변경)신청서(개인)														
		성	명								생년월 1등록)		
(T)?	신청인	(법인	명)				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		
		주	소							전화번호(휴대폰)			•)		
		입금계	계 좌		<u>0</u>	행 (예	금주)			7:	계좌번	ত			
	②농지 소재지				③지목 및 면적(m²)			④경관작물별 식재면적(m²)				(5차배시기	비고		
	시·군	읍. 면	리.	. 동	번지	논	밭	과수원	기타					(平)	H 112
신 청															
토 지															
	합계														

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.

> 년 월 일 신청인 (인)

○○○ 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수수료	
없 음	

※ 신청서 기재요령

-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,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-논, 밭, 과수원, 기타(사실상 농지 포함, 하천부지 제외)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.
- ③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, 밭, 과수원, 기타(사실상 농지 포함, 하천부지 제외)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④란은 경관작물명과 식재면적을 기재합니다.
-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시기(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)를 기재합니다. (예, $6\sim10$ 월)

(비고)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.

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(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은 경관보전직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 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 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 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	2020 년	월	일
신청인 (개인정보 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자)		(서명 또	는 인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• 활용 동의

1.	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	기재한 신청인	의 개인정보	를 농림축산식품	·부의 맞춤형	형 농정지원,	농정안내
	서비스, 지방 농정 지원,	농업 • 농촌 사회	희 안정망 지원	원 등 농업경영체	육성 및 X	원을 위한 기	기초자료로
	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	다.	[] 동의	[] 거부			

2.	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	국립
	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	

[] 동의 [] 거부

- 3.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, 보조금 등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- 4.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(성명, 농지지번, 신청면적,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)을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」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거부

- ※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),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 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2020 년 월 일

신청인	(Alpt EE - 01)
(개인정보 이용・제공・활용 동의자)	(서명 또는 인)

경관보전직불제 대상(변경) 확인결과

ㅇ 신청(변경)자 명단

사업 지구명	주소 (번지)	성명	신청면적		확(인면적		지급예상액	비고	
지구명	(번지)	0 0	(m²)	합계	논	밭	과수원	기타	(원)	H1-12
	소계	○○ 명 신청								

년 월 일

○ ○ 면(읍·동)장 (인)

*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

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(변경) 통지서

-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1. 마을(경관보전추진위원회) 현황

지 구 명		추진위원장	
-------	--	-------	--

2. 선정자(변경) 명단

어베	્રો સ્ત્રે 11ને	ス 、		대 상	면 적	(m²)		보조금	
연번	성 명	주 소	합계	논	밭	과유원	기타	보조금 예상액 (원)	
	합	계							

※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읍·면장,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

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

<ㅇㅇ시·군·구>

	위	치	면적	경관			Ž	주 요 점	검 항 목			
지구명	시· 군	읍· 면	(m²)	작물	계 (100점)	미관성 (20)	창의성 (20)	연계성 (30)	집단화 (10)	성취도 (10)	계획성 (10)	가감점

점검항목	배점비율	배 점	기 준	점수				
미관성	20점	◇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◇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◇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						
창의성	20점		◇ 간작(색동재배), 디자인재배,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◇ 경관작물 혼파,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◇ 단일작물 재배					
연계성	30점	 ◇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◇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·현장학습·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◇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						
		경관작물	준경관작물					
집단화 면적	10점	10ha 이상 50ha 이상 5ha 이상 25ha 이상 2ha 이상 10ha 이상						
성취도	10점	◇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◇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%◇ 관광객 등 감소		10점 5점 1점				
계획성	10점	◇ 시·군이나 읍·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◇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◇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						
우선선정대상	가점	 ◇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, 시·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,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·은·동상 수상마을 ◇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지정마을,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,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						
전년도 이행점검결과	감점	입선 마을,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◇ 미파종 면적이 35% 이상 ◇ 미파종 면적이 30% 이상 35% 미만 ◇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%이상일 경우						

마을 경관보전 협약서(예시)

지	Ţ	7	配		도	시	· 군	<u></u> 自	• 면	<u> </u>	리	아
협	약	참기	가자	총	명	(농약	법인		, 법	인)
대	상	면	적	총	m²	(논	,	밭	,	기타)

협 약 일: 년 월 일

협약변경일: 년 월 일

협약변경일: 년 월 일

마을경관보전협약서(예시)
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○ ○ ○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

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을 "갑"이라 하고 ○○○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"을"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

- 1. **약정기한**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년간)
- 2. 약정내용
 - 제1조(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) ①"을"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 주민대표(이장 등), 경관 작물 재배농가(2명 이상),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(2명 이상)을 포함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.
 -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,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·사업신청·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경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,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"갑"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.
 -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.
 - ⑥"을"의 각 구성원은 "갑"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·식재·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.
 - 1. 경관작물 식재
 - 가. 해당 농지의 토양, 토질,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

- 2. 성실한 재배관리
 - 가.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
 - 나.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
 - 다.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
 - 라.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
 - 마.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
- 3.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(수시)
 - 가. 유휴지 관리, 수로정비, 논두렁 정비,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
 - 나.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
- 제2조(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) ①"갑"은 "을"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 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"을"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.
- 제3조(보조금의 회수 등) ①"갑"은 "을"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,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.
 - ②"갑"은 "을"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·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.
 - 1. 파종 및 식재 불이행 :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
 - 2. 면적 부족 :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
 - 3. 관리 부실 :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기준에 의함
 - 4. 집단화 기준 미충족 :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
- 제4조(해석)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"갑", "을"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」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특약사항)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"갑"과 "을"간 또는 "을"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<특약사항>

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"갑" "을" 쌍방이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"갑" 시장·군수·구청장: 인 "을" 위 원 장 성명: 인 추진 위원 성명: 인 추진 위원 성명: 인 추진 위원 성명: 인 추진 위원 성명: ٩Ì 추진 위원 성명: 인 추진 위원 성명: 인 추진 위원 성명: 인

추진 위원 성명:

인

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(작물재배관리)

다 다	주 무	소장(과장)

		신청	지	구	현	홧
--	--	----	---	---	---	---

지구명(주소)		<u>주요</u> 품목	
추진위원장	생년월일	전화번호	

- □ 이행점검 결과
-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: 여 □, 부 □
- *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: 경관작물 2ha, 준경관작물 10ha
- O 작물재배관리

		신청현	황			불일치				
신청인	농지 소재지	신청품목	공부상 면적	신청 면적	재배 품목	파종 면적	생육 및 개화면적	집단화	보존 기간	사유
합계										

	특여	기사	·항								

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조 사 자 (소속) (직) (성명) (인)

확 인 자 (소속) (직) (성명) (인)

❖ 조사표 작성방법 ❖

- □ 불가피(사망, 농지매매 등)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%이상 최소면 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
- □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 면적을,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, 집단화,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또는 ×를 각각 표시
- □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
- □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
 -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%를 초과할 때 : 불량비율 만큼 감액
 - 파종 이후 보존기간(5.15, 10.15)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: 미 파종으로 간주(감 100%)
 - ※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

❖ 불일치 사유 ❖

- ① 휴경, ② 폐경, ③ 미재배, ④ 비대상작물, ⑤ 중복신청, ⑥ 실경작아님,
- ⑦ 자진취소, ⑧ 기타
- ※ "불일치 사유"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

<< 직불금 계산식 >>

-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% 이상일 경우
 - 직불금액 = 파종면적 * 직불금단가
-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% 미만일 경우
 - 직불금액 = (파종면적*직불금단가*0.5) + (파종면적*직불금단가*0.5*생육 및 개화면적비율)
 - * 직불금 지급단가 : 경관작물 170원/㎡, 준경관작물 100원/㎡

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

1.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농업경영체등록번호	
주소	전화번호 (휴대폰)	

2.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

소재지		공부상		내용	조사결과	비고	
법정리·동명	본번	부번	면적 (m²)	품목	면적(m²)	(품목 및 면적(m²))	(불일차사유)

3.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

※ 사유 기재			

경관보전직물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 를 신청합니다.

>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> >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

(사업대상확정, 보조금지급, 사업수요조사)

시 사업지구명			위 치		참 여 경관 _		대상 면적(m²)				
연번	시업지구명 (마을명)	시·군	읍·면	리	참 여 농가수 (호)	경관 작물	합계	논	밭	과수원	기타
합계											
1											
2											
3											
4											

	사업	비(천원)		1 41 71 11 91
합계	경	관작물재배관	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	
업계	소계	국고	지방비	

- 주1.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: 지역축제, 농촌관광, 도농교류 등 관련 프로그램명을 기재
 - 2. 경관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
 - 3.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,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

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

담 당	계 장	과 장

□ 신청지구 현황

지구명(주소)		
추진위원장	주요품목	

- □ 집단화 여부 확인
-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

	신청 현황	확인 결과			
신청품목	공부상면적(㎡)	신청면적(㎡)	집단화 포함면적(㎡)	집단화 제외면적(㎡)	
합 계					

- * 집단화 제외 면적(해당 필지)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
- 집단화 적정 여부("○" 또는 "√")

적 정	부적정

*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: 경관작물 2ha, 준경관작물 10ha (동일지구에 경관/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,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,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)

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소 속 :	직 :	성 명 :	(서명)
소 속 :	직 :	성 명 :	(서명)
소 속 :	직 :	성 명 :	(서명)

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

시·군·구 교부액		사업지구수		지급	지급농가수(호)		지급면적(m²)			지급 결과(천원)			
(천원)	(천원)	계	동계	하계	계	동계	하계	계	동계	하계	계	동계	하계
합계													

※ 시·도는 관할 시·군·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